

청주지방법원 지원 군법원
등본입니다.
이행권고결정
 2022. 12.
 법원주사보

사 건 2022가소 기계수리대금
 원 고 주식회사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대표이사
 피 고 김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행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2. 11.

판사



- ※ 1.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청주지방법원 지원 법원 소액1단독 법원주사보
 직 통 전 화 : 043-
 팩 스 : 043- e-mai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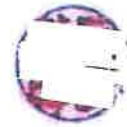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023. 1. 10.

판사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22가소 : 기계수리대금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김 |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2023. 1. . 자에 수령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1. .

위 원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지원

법원

귀중

소취하서

사건번호 2022가소 기계수리대금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김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를 취하합니다.

2023. 2.

위 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제출자:
관 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094

청주지방법원

지원

군법원

귀중